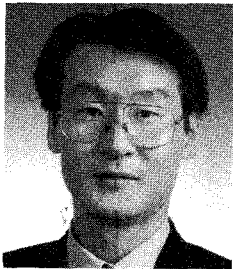


일본의 인공수정제도



김 윤 식

1. 가축 인공수정의 역사

일본의 인공수정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고, 1896년에 벌써 新山박사가 미국으로부터 인공수정기구를 가지고와 下總御料목장에서 많은 두수의 말에 실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것에 이어 인공수정에 도전하고자하는 사람이 없었고 이와노프연구가 알려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의 일이었다.

1912년 石川박사가 소련의 이와노프연구소에 연수하고 인공수정의 기술을 습득해 일본에 귀국하여 石川박사를 중심으로 수의학 및 의학 전공자가 인공수정에 관한 연구를 개시하였고 당시로서는 많은 연구보고가 나왔다. 그 연구 내용으로는 정자의 생리에 관한 연구와 3개의 종마목장(種馬牧場)에서 실제 인공수정을 실시하여 세계 인공수정 역사에 있어서 대서 특필될 사건이었다. 이 시기가 일본의 인공수정의 제2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사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광범위한 실용화에는 빛을 보지 못하였다. 그후에도 계속하여 적은 두수의 말에 실시하였지만 이것도 역시 시험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1930년 이후 즉 제3기에 돌입해 인공수정의 의의가 겨우 말 이외의 가축에 있어서도 인정되어 염소, 양, 돼지, 토끼등이 연구의 대상이었다. 또한 부분적으로 실계의 번식에도 이루어졌다. 그때 상황은 트리코모나스증의 예방을 주목적으로 해서 지방에서는 상당수의 소가 인공수정에 의해 번식되고 번식장애를 줄일 목적

으로 많은 기술자가 양성되었다.

그후 전국적인 규모로 조직적으로 보급을 가능하게된 가축은 말이었다. 1937년에 정부의 계획에 의해 말의 증산 시설이 각지에 설치되고 비교적 많은 말에 실시하게 되었다. 농용말, 군대에서 사용될 말의 수요에 따라 생산이 증가되었다. 이것이 밑받침이 되어 인공수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농림성 마사연구소에서 기술연구가 이루어져 매년 인공수정 두수가 증가되었다. 그후 농작과 운송의 기계화에 따라 말의 생산이 급격히 저하되고 인공수정 두수도 감소하게 되었다.

제4기라고 하는 시기는 소의 인공수정이 세계적으로 실시되면서 연구면에 소나 보급면에서 성과가 매우 컸다. 그리고 1950년에 가축 개량 증식법을 제정하여 인공수정의 보급이 확대되었다.

매년 비약적으로 인공수정두수를 증가시켜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소에 있어서 인공수정에 의해 번식되고 있다. 이러한 동안 돼지, 염소등의 인공수정에 관한 기초와 응용연구도 크게 진전되었고 이들 가축의 인공수정율이 1956년에 약10%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염소 인공수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일본의 가축 연간 인공수정 두수와 보급율

최근에 일본의 가축 인공수정 두수와 보급율을 보면 1990년을 기준해서 젖소는 99.7%, 육용우는 93.6%가 이용되고 있으며, 이중에 동결정액 이용율은 젖소가 99.6%, 육용우가 99.8%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소의 인공수정 실시상황

(단위 : 1,000두)

년 도	젖 소		육 용 우		합 계	
	수정두수	보급율(%)	수정두수	보급율(%)	수정두수	보급율(%)
1951	98	69.1	182	35.2	279	42.3
1955	262	91.8	486	74.1	748	79.5
1960	574	96.5	590	86.4	1,163	91.3
1965	906	98.2	470	90.7	1,376	94.5
1970	1,228	98.7	594	94.6	1,822	97.4
1981	1,478	99.3	593	92.1	2,071	97.1
1982	1,482	99.4	614	92.2	2,099	97.2
1983	1,517	99.4	593	91.8	2,110	97.1
1984	1,580	99.4	570	92.0	2,150	97.4

년 도	젖 소		육 용 우		합 계	
	수정두수	보급율(%)	수정두수	보급율(%)	수정두수	보급율(%)
1985	1,584	99.4	546	91.9	2,130	97.1
1986	1,594	99.5	543	92.9	2,137	97.7
1987	1,530	99.6	572	93.4	2,102	98.0
1988	1,539	99.3	584	94.0	2,123	98.0
1989	1,542	99.6	602	94.2	2,144	98.0
1990	1,566	99.7	636	93.6	2,202	98.0

〈표 2〉 말, 돼지, 염소, 양의 인공수정 두수

년	도	말 수정두수	동 보 급 율	돼지수정두수	산양수정두수	면양수정두수
1951		7,792	4.3	5,143	3,604	3,189
1955		10,154	6.9	23,235	30,214	4,442
1960		18,129	15.2	47,320	34,582	1,066
1965		9,020	13.9	105,255	7,736	872
1970		720	—	98,114	5,425	203
1980		56	0.2	66,836	—	—
1982		184	0.7	52,499	—	—
1984		239	0.9	45,310	—	—
1986		29	0.2	37,102	—	—
1987		—	—	30,773	—	—
1988		—	—	30,319	—	—
1989		—	—	24,970	—	—
1990		—	—	24,280	—	—

〈표 3〉 소의 인공수정에 있어서 동결정액의 이용

년 도	젖 소		육 용 우	
	동결정액두수(만두)	보급율(%)	동결정액두수(만두)	보급율(%)
1965	2.1	2.3	0.3	0.6
1967	20.9	20.9	7.6	1.2
1969	75.4	57.8	9.8	14.9
1971	113.6	89.2	24.7	45.4
1981	145.5	98.4	58.8	99.1
1982	145.8	98.4	60.7	99.0
1983	149.6	98.6	58.7	99.0
1984	155.9	98.7	56.2	98.7
1985	156.5	98.8	54.3	99.4
1986	157.5	98.8	52.3	96.2
1987	152.0	99.4	56.9	99.5
1988	152.9	99.3	58.4	99.9
1989	153.8	99.7	60.1	99.8
1990	156.0	99.6	63.5	99.8

3. 가축개량증식법안

일본의 법률은 가축의 개량증식을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조직, 이것에 관련된 필요한 종축의 확보 및 가축수정란이식, 그리고 농업

경영의 개선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국가나 각도는 가축의 개량증식의 촉진에 유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다.

〈표 4〉 가축개량증식법 개정 관련 시행법령 등

(법률)

1983. 11. 19 (5. 20공포)	(A)가축개량증식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1983. 법률 제49호
---------------------------	-------------------------	---------------

1983. 12. 2	(B) 국가행정조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리등에 관한 법률	1983. 법률 제78호
1983. 12. 10	(C) 행정사무의 간소합리화 및 정리에 관한 법률	1983. 법률 제83호
1985. 7. 12	(D) 지방공공단체의 사무에 관한 나라의 관여등의 정리합리 화 등에 관한 법률	1985. 법률 제90호

(정령)

1983. 11. 19 (11. 11 공포)	가축개량증식법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1983. 정령 제227호	법률(A)
1984. 7. 1 (6. 21일 공포)	농림수산성조직령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1984. 정령 제207호	법률(B)

(성령)

1983. 11. 19 (11. 18 공포)	가축개량증식법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1983 농림수산성령 제40호	법률(A)
1984. 3. 1	가축개량증식법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1985 농림수산성령 제2호	법률(C)
1985. 7. 12	가축개량증식법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1985 농림수산성령 제27호	법률(D)

(고시)

1984. 10. 6 (8. 6 고시)	종축의 등급판정기준을 정하는 등의 건	1984 농림수산성고시 1542호
1984. 8. 6	수입정액증명서의 발행자의 지정	1984년 농림수산성고시 1543호

(통달)

1984. 5. 16	가축개량증식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대해서	59축 A 제133호	사무차관
1984. 6. 4	가축인공수정에 관한 강습회등의 가축인공수정 및 가축수정란 이식에 관한 강습회의 운영등에 대해서	59축 A 제1654호	축산국장
1984. 6. 28	가축개량증식법 제9조의 제2에 규정하는 수의사에 의한 진단에 관해서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59축 A 제2355호	축산국장
1984. 7. 14	학술연구용의 가축인공수정용정액과 수입에 대해서	59축 A 제2534호	축산국장
1984. 8. 6	1984년 8월 6일 농림수산성공시 제1542호(종축의 등급판정 기준을 정하는 건)를 근거로 외국의 가축등록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의 지정에 대해서	59축 A 제2708호	축산국장
1984. 10. 6	종축검사집무요령에 대해서	59축 A 제3621호	축산국장

4. 가축인공수정용 정액보급 및 가축수정란의 양도등의 제한

일본에서는 가축인공수정용 정액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가축인공수정용정액 및 수정란을 양도하거나, 혹은 암축에 주입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가.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가축인공수정용정액이더라도 외국의 정부기관과 타주령이 정한자에 의해 발행되고 또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또 믿을만한 기재내용이 있는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을 것을 양도하거나 또는 암축에 주입하는 경우
- 나. 소, 말 기타외국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에 관계되는 가축인공수정용정액이더라

도 해당가축인공수정용정액의 채취용으로 제안한 수컷의 가축이, 성령(省令)으로 정하는 전염성질환과 번식기능의 장애를 갖고 있지 않고 또 종축증명서, 종축혈통, 능력 및 체형에 관한 등급등이 분명해야 함

- 다. 외국의 법령에 의해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에 상당하는 자격을 갖고 있는 자, 그외 성령(省令)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검사하고, 용기에 담고, 또 봉인을 실시한 가축인공수정용 정액일 것
- 라. 가축인공수정을 정확히, 또 위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되는 시설에서 채취되고, 또 처리된 가축인공수정용 정액일 것(제14조). 또한 수의사나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인공수정 또는 가축수정란이식에 관한 사항을 가축인공수정

전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대장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제15조).

으로 보관)

전면 : 증명서번호, 이름, 등록기관 및 등록
번호, 품종, 생년월일, 혈통

후면 : 수정시킨 암가축의 자료(번호, 이름,
등록번호 및 번호, 품종, 모색과 특
징, 생년월일) 종부일시, 자축생산두
수와 생년월일

**5. 가축수정 및 정액채취에 관한
양식(소, 말, 돼지, 면양, 산양
공통)**

가. 자연종부에 관한 양식(종축 1두당 별권

※ 종부대장의 양식(전면)

(시행규칙 양식 제4호, 종부대장의 표지 양식 1)

수 정 대 장			
종축	종축증명서번호	1979 후쿠시마 3 제159호	
	이 름	스광 토프시 에스쿠티	
	가축등록	가축등록 기관명	일본 홀스타인 등록협회
		등록번호	일홀혈 43878
	종류와 품종	소(유용우), 홀스타인종	
	생년월일	1972년 8월 10일	
	혈 통	아 비	글레나프톤 라그아플 스광그르(AR161614)
		어 미	매쿠인 토프시 에스쿠티(AR161614)
종축사양자 주소 이름 또는 명칭			

※ 비고

1. 위의 종부대장은 종축마다 별권으로 해서 철에 보관할 것

※ **중부대장의 양식(후면)**

(시행규칙 제4호 양식 2, 중부에 관한 사항)

수 정 시 킨 압 축	번 호	15					
	이 름	섹서스 오스카-파리아 마나카와 4-2					
	가축등록기관명과 등 록 번 호	일본중돈등록협회 중제 270506					
	종 류 와 품 종	돼지, 랜드레이스					
	모 색 과 특 징	백					
	생 년 월 일	1977년 9월 16일					
	사양자외두수와 이름또는명칭						
	적 요						
중 부 년 월 일		1979년 2월 1일	2월 22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수 정	발행년월일	1979. 9. 26					
	번호와기인	NO.7					
자 축	성	숫 8, 암 7					
	생년월일	1979. 6. 16					
	적요						

※ **비고**

1. 이 장부에는 자연 수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것
2. 돼지에 대하여는-자축의 성의 란에 암컷과 수컷을 각기 구별하여 수를 기재한다.

나. 가축인공수정용 정액의 채취와 처리에
관한 사항(인공수정센터 보관)

중축 : 증명서번호, 이름, 종류와 품종, 생년
월일, 사양자주소 및 성명

채취 : 년월일, 시각, 채취량, 색, 냄새, 정
자수, 활력과 생존율, 기형율, 회석액

과 회석배율, 인공수정용 정액증명서
번호

정액의 양도 : 년월일, 정액증명서번호, 양도
량, 양도처

※ 가축인공수정용정액의취와 처리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양식 제9호 양식2)

종축	종축증명서번호			이름			종류와 품종			생년월일		사양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1983 호고 5 제48호			복수			육용우 흑모화종			1983. 5. 5		호고현미방군미방리	
채취 년월 일채	채취 시간	채취량	색	냄새	매	정자수	활력과 생존률	기형률	희석액과 희석배율	동결후의 활력과 생존률※	가축인공수정용 정액증명서번호		

정액의 양도(※)				적 요
년 월 일	가축인공수정용 정액증명서번호	양 도 량	양도처의 주소와 이름 또는 성명	

※ 비 고

1. 이 장부에는 종축마다 작성해서 가축인공수정용정액의 채취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2. 정액을 채취하여 봉을 하지않고, 그 정소에서 압축에 주입해 또는 체외수정을 했을 때는 적요란에 그 정액채취에 관한 증명서(을)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종축의 사양자이면서, 종부대장(양식 제4호, 양식 3호)에 기재한 경우는 이 장부의 기재를 필요치 않는다.
4. ※인의 란에는 정액을 동결처리하지 않는 경우는, 기재를 필요치 않는다.
5. (※)인의 한에는, 정액을 채취한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정액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기재한다.

다. 정액채취에 관한 증명서(농가 공급용)
 정액을 채취한 종축 : 증명서번호, 종축의 등
 급, 이름, 등록기관 및 등록번호, 종류와 품

종, 정액 채취 년월일, 정액을 채취한 수정사
 면허번호와 주소 및 성명, 정액의 채취량과
 성상, 희석액과 희석배율

※ 정액 채취에 관한 증명서의 양식
 (시행규칙 양식 제6호)

제45호

정액채취에 관한 증명서(감)

정액용 채취한 종축	종축증명서번호	1979년 가고시마 3 제146호	종축의 등급	특급
	이름	화인		
	가축등록기관명과 등록번호	전국화우등록협회 고 2294		
	종류와 품종	육용우, 후모화종		
정액 채취 년월일	1979. 8. 25			
※ 정액용 채취한 가축인공수 정사의 면허번호와 주소, 성명	가고시마현 421호 가고시마현 일치군 일칠촌			
※ 정액의 채취량과 성상	7cc, 85兩			
※ 희석액과 희석배율	난황원충액 7배			

상기와 같이 가축인공수정용 정액을 채취한 것을 증명한다.
1979년 8월 31일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번호 가고시마현 제421호	
	주소	
	성명	인
※ 종축사양자	주소	
	성명	인

(비고) 이 증명서는 정액을 채취한, 가축인공수정사와 그 종축의 사양자가 다를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일본공업규격 A5)

- ※ 비 고
1. ※인의 란에는 정액을 채취한 가축인공수정사가 종축의 사양자에 대해서 교부할 경우는 기재될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인의 란에는 종축의 사양자가 정액을 채취한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해서 교부하는 경우는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정액을 동결 처리한 경우는 용지의 우측상단에 **동결** 이라고 기재할 것

라. 가축인공수정용 정액증명서
(농가 공급용)

전면 : 증명서번호, 이름, 등록기관명 및 등록번호, 종류와 품종, 정액채취 년월일, 사양자 주소 및 성명, 인공수정사 면허번호 및 주소 성명

※ 비고 1) 이 증명서는 가축인공수정용 정액의 용기에 첨부함

2) 정액을 동결처리한 경우는 용지의 우측 상단에 “동결”이라고 기재함

후면 : 수정사 면허번호와 이름, 암가축 사양자 이름, 암가축의 이름, 등록기관 및 등록번호, 수정년월일, 정액이 이동될 때는 양도인과 양도 년월일 기재

※ 가축인공수정부등의 양식과 기재 예

○ 가축인공수정용 정액 증명서 (전면)(시행규칙 양식 제7호 양식 1)

제1579호					동결
가축인공수정용 정액증명서					
정액용 채취한 종축	종축증명서 번호	1992년 1 제15호	종축의 등급	특급	
	이름	파이노니아 아좌테			
	가축등록기관명과 등록번호	JCAT NO.423 유용우 자지종			
	종류와 품종				
정액채취년월일		1992년 12월 12일			
종축사양자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이와테 현 모리소카시 72-1 농림수산성 이와테 종축목장 인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의 등록번호(면허번호)와 주소 성명		동 상 북해도 일 제73호 ○ ○ ○ ○ 인			

※ 비고 (일본공업규격 A7)

- 이 증명서는 가축인공수정용 정액의 용기에 첨부한다.
- 정액용 동결처리한 경우는 용지의 우측상단에 [동결] 이라고 기재한다.
- 이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용기의 정액의 주입을 받은 암축의 사양가로부터 수정증명서의 교부를 요청받았을 때는, 이 증명서를 수정증명서에 첨부한다. 수정증명서의 교부를 요구받기전에는, 이 증명서를 가축인공수정부에 첨부해 둔다.
- 후대검정 기간중 등의 보관정액 이라도 검정종료후 그 정액을 인공수정소로부터 양도할 때에, 본 정액을 채취한 종모우의 등급이 바뀌어졌더라도 그 종축증명서 번호와 종축의 등급을 같이 기입해도 상관없다.

※ 가축인공수정용 정액증명서(후면)

(시행규칙 양식 제7호 양식 2)

[참 고] 주입 또는 체외수정기록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의 등록번호(면허번호)와 이름	오카야마현 제7235호 ○ ○ ①인
주입을 받은 암축의 사양자 또는 체외수정에 관계되는 미수정란의 소유자의 이름 또는 명칭	○ ○ ○ ○
주입을 받는 암축 또는 체외수정란에 관계되는 미수정란을 채취한 난소를 채취한 암축의 이름	메르 코만도 에프프레스
가축등록기관명 및 등록번호 주입 또는 체외수정 년 월 일	JCAJ NO 12095 1992. 12. 24

양도·경유의 확인

양도·경유의 확인	양도·경유의 확인	양도·경유의 확인
가축개량사업단 1992. 12. 13	오카야마현 가축개량협회 1992. 12. 20	

※ 비 고

1. 확인란에는 경유기관이나 명칭과 년월일을 기재한다. 또, 년월일은 경유기관에서부터 공급한 날을 기입한다.

마. 수정증명서(농가공급용, 수정사보관용)

종축 : 증명서번호, 이름

암가축 : 이름, 등록기관 및 등록번호, 종류
와 품종, 모색과 특징, 생년월일,
사육자의 주소와 성명, 수정년월일,
수정사 면허번호와 성명

※ 비고 1) 암가축에게 수정할때 정액증명서, 정액채취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함

2) 복사용지 사용(1매는 농가에, 1매는 수정사 보관)

※ 수정증명서의 양식(시행규칙 양식 제10호)

제123호				
수 정 증 명 서				
종축	증명서번호	NO 25475	이름	로메오 스키이라-크 도라마
정액을 주입한 암축	이름	마담 린다 콘콘케스트		
	가축등록기관명과 등록번호	일홀혈 2414837		
	종류와 품종	소(유용우), 홀스타인종		
	모색과 특징	흑백, 우측 엉덩이 작은 백반 2		
	생년월일	1975. 12. 7		
	사육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 ○ ○ ○		
정액주입년월일		1979. 11. 9		
<p>상기와 같이 가축인공수정용정액을 암축에 주입한 것을 증명한다.</p> <p>1979년 11월 9일</p> <p>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등록번호(면허번호) 후쿠시마현 제234호 주소 후쿠시마현 성명 ○ ○ ○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가축인공 수정용정액증명서 또는 정액채취에 관한 증명서(을)를 여기에 첨부한다.)</p>				

※ 비 고

1. 복사식의 용지를 사용해 1부는 정액을 주입한 암축의 사양자에게 건네주고, 복사한 것은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보관해 두어야 함.

7. 농가에 비치된 번식대장기록 (정액의 주입에 관한 사항)

양축농가에게 수정을 했을때는 수정사는 가축인공수정용 정액증명서와 정액채취에 관한 증명서, 수정증명서를 기록한 후 동시에 양축농가에게 전달해야한다. 만약 이 사항을 지키

지 않을 경우는 30만엔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동 증명서를 기록하지 않고 주었다든가 정부에서 정한 규격의 증명서가 아닐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뿐만 아니라 농가에 비치된 가축인공수정용 정액의 주입에 관한 대장은 양축가가 혈통 및 능력등을 기록하지만 수정사는 정액의 주입년월일, 이름, 인공수정증명서번호

를 기입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특히 소의 경유는 양축가를 위한 수정월일, 종모우명, 발정

징후, 점액소견, 자궁소견, 난소소견등을 기록하고 서명을 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있다.

※ 가축인공수정용정액의 주입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양식 제9호 양식 3)

주 입 한 암 축	번 호	392			
	이 름	레크사이드 카운테스 마리린			
	가축등록기관명및 등 록 번 호	일 룰 혈 2392661			
	종 류 와 품 종	유용우, 홀스타인종			
	모 색 과 특 징	백 흑, 좌측다리흑반 1			
	생 년 월 일	1973. 1. 23			
	사양자와의주소와 이름 또는 성명	○ ○ ○ ○			
주 입 정 액	주 입 년 월 일	1983년 7월 10일	8월 21일	월 일	월 일
	종 축 의 이 름	미소노시엠웨르킨	6 사이테션린돈		
	가축인공수정용 정액증명서번호	35717	17825		
수정 증명서	발 행 년 월 일	1983년 10월 1일	12월 5일		
	번 호 와 기 인	NO 213	NO 48		
자 축	성	암			
	생 년 월 일	1984. 5. 20			
적	요				

※ 비 고

1. 면양, 암소와 돼지에 관해서는 자축의 성의란에 ♂(숫)과 ♀(암)의 별도로 그 두수를 기재하도록 함
2. 주임을 받은 암축의 사양자로부터 수정증명서의 교부를 요구받기전에는 가축인공수정용 정액증명서를 첨부해 두도록 함.

8. 결 론

일본의 가축개량증식법을 보게되면 복잡하다. 정액을 제조하거나 운반하거나, 시술하는 사람들의 모든 조치 사항을 법제도화하여 우리나라 현실과는 너무 맞지 않는 면도 있다. 그러나 개량의 기초는 개량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가 정확한 기록과 정확한 시술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귀찮지만 법에 따라 일을 하면 그만큼 그 나라의 축산업은 발전되게 되어있

다. 우리나라 현실을 살펴보면 축산법에 명시된 정액혈통 및 인공수정증명서 1매로 정액증명서, 혈통증명서, 수정증명서, 능력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매우 간편하게 되어 있다. 대부분 수정사들이 편리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일부 수정사나 돼지 AI센터에서는 지금도 농가들이 원치 않는다고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최소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양축가를 선도하고 있는 개량사들 만큼은 한국 축산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명심하시고, 시행하도록 독려하고 싶다.

축산용어해설

- 차렌지 피딩 (challenge feeding : lead feeding) : 미국에서 행하여져온 고능력의 젖소에 대한 사양법을 말하며, 리-드 리딩이라고도 한다. 고능력우에서는 분만후 부터 최고 유기에 이르기까지 비유량에 상응한 양분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체내에 축적된 양분을 소비하고 체중을 감소한다. 이때문에 분만 약 2주간전 부터 농후사료를 점차로 증가하며 제1위 발효를 이에 길들여 분만후의 사료섭취량의 증가를 도모하고 체내에 축적도 증가하여 고유량을 지속시키는 사양법을 말한다. 그러나 저능력우에서는 이방법을 취하면 과비로되고 번식장애나 질병의 원인으로 된다.
- 일당증체량 (日當增體量 : daily gain) : 1일 증체량이 라고도 하며 1일당의 총체중의 증가량을 말한다. 육성가축 및 육용가축의 발육 및 비육의 진도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용된다. 어느기간의 처음과 끝내는 마지막의 체중의 차를 그 일수로 나눈 수치가 사용된다.
- 가공용타잎 (加工用型 : bacon type) : 돼지의 품종을 고기의 용도에 따라 분류하는 때에 lard type, meat type, bacon type의 분류의 종래에 취하여온 하나이다. 가공용 타잎은 육제품의 제조용으로 적합하고 이 목적으로 육종개량되어진 돼지로 지방이 적고 동체의 신장이 좋고 후구의 발육도 좋아 육량이 풍부하고 번식, 육성능력, 사료효율이 양호한 품종의 총칭이다. <예> 대요오크셔, 랜드레이스종이 이에 속한다.